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534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5341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3가단3048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항소인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김소연

변론 종결 2023. 10. 20.

판결 선고 2023. 12. 2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3가단30483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규약 제10조, 제13조에 따라 업무집행비 등으로 사용한 분담금을 공제하고, 그 환불시기는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때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각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탈퇴 또는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집행동의서, 조합규약동의서, 사업계획동의서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자금집행동의서, 조합규약동의서, 사업계획동의서 등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의 위 동의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자금집행 등에 관한 원고들의 위 동의도 함께 실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성호

판사최지영

판사이재희

1)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